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⑬ 서비스 제공시간			
⑧ 연번	⑨ 시설명	⑩ 투자금액	⑫ 기술연번	⑭ 측정기간	⑮ 총 서비스 제공시간 (⑮+⑯)	⑰ 국가 전략기술	⑱ 국가전략 기술 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 또는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에 '사용'이라고 적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서비스 제공시간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기술 연번	측정기간	총 서비스 제공시간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외
1	0000	0000	8.인공지능	2025.12.1. ~ 2028.12.3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2	0000	0000	8.인공지능	2025.12.1. ~ 2028.12.31.	00시간	00시간	00시간

3. “⑫ 기술연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의 서비스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습니다.
4. “⑭ 측정기간”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⑮ 총 서비스 제공시간”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6. “⑯ 국가전략기술”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
7. “⑰ 국가전략기술 외”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적습니다.